

울산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262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은빛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홍수형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주식회사 E은 2016. 7. 18. D에게 4,2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약정금리 연 21.9%, 연체금리 연 27.9%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D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은행은 2019. 9. 19.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29731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망 F의 사망,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 1) D의 부친인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1. 4.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G,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D이 있는데, 피고들과 D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씩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2)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 5. 28.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다.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은 D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포기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들에게 모두 이전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기여분 내지 D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의 기여분과 D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 B의 기여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의 특별수익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G가 2011. 3. 30. 자신의 계좌에서 110,702,420원을 출금한 사실, D이 같은 날 울산 남구 H아파트 I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D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의 채무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1/9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부동산 목록

1. 울산광역시 중구 대 175.4㎡

2.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백담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91.55㎡, 2층 76.75㎡

부속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및 창고 3.95㎡ 등.

